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1.15.(월)	담당부서	통상법무과
담당과장	신정훈 과장(044-203-5770)	담 당 자	장정주 사무관(044-203-5771)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1.12.금,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 지난 '17.11.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였으며,**

-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한 것이다.

* 조치 개요 : 미국 상무부는 '14.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17.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 판정 내용 :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임

※ 구성가격 :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경우와 같이 수출은 있으되 비교가능한 내수 판매가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 구성가격 산정 공식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

□ 분쟁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했다.

* WTO 협정은 RPT를 당사국간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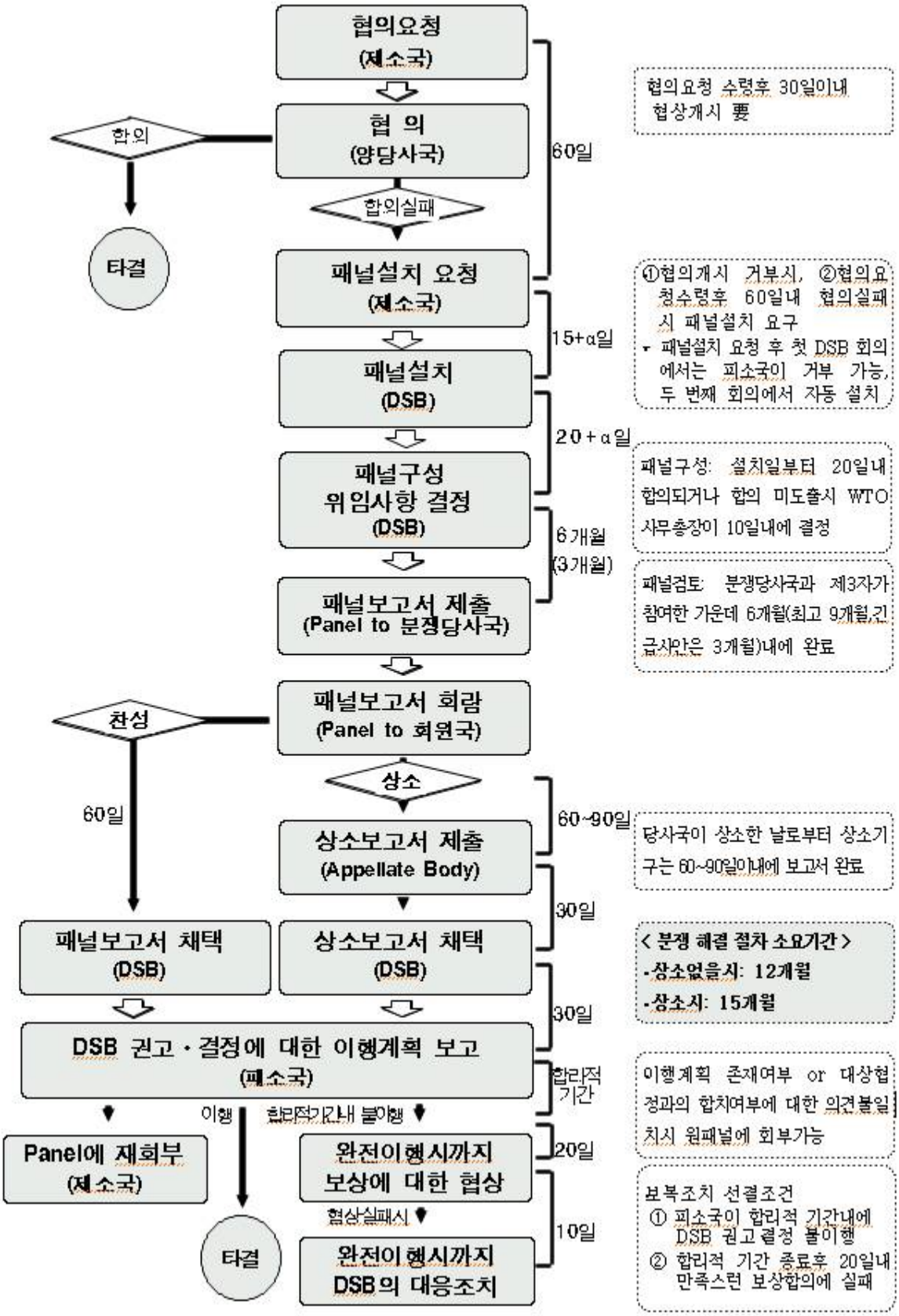
○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붙 임】1. WTO 분쟁해결절차도
2. 분쟁진행경과
3. 패널 최종보고서 상세 결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044-203-5770)/장정주 사무관(☎044-203-57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WTO 분쟁절차도**



붙임 2 **분쟁진행경과**

1. 미국 조치의 주요 내용

○ ’14.7.11.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고율(9.89~15.75%)의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판정***

* 현대제철(15.75%), 넥스틸(9.89%), 세아제강 · 휴스틸 등 기타업체(12.82%)

- 한국산 제품은 국내수요가 없어 생산량의 대부분(98%)을 미국으로 수출하며, ’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4천톤(8.17억불) 규모
- 미국내 반덤핑 조사대상 9개국 제품 전체 수입량(1,598천톤) 중 56% 차지

○ 덤핑률 판정 이후 국내업체들은 덤핑률만큼의 Deposit을 납부하고 수출중

2. 주요 경과

○ ’14.12.22. 우리 정부, 美측의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 ’15.1.21. 양자협의를 했으나 합의 실패

○ ’15.3.10. 패널설치 요청, ‘15.3.24. 패널 설치

○ ’15.7.14. 패널 구성

* John Adank(의장, 뉴질랜드), Abd El Rahman Fawzy(이집트), Gustav Brink(남아공)

○ ’16.7.20.~21.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패널 의장 변경 : Crawford Falconer(뉴질랜드)

○ ’16.11.2.~3.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7.4.5. 패널 잠정보고서 배포(대외 비공개)

○ ’17.5.10. 패널 최종보고서 배포(대외 비공개)

○ ’17.11.14. 패널 최종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공개본)

붙임 3 **패널 최종보고서 상세 결과**

	주요 쟁점 및 패널의 판단
구성가격 산정방식	- **구성가격 산정 근거자료** : 미국 상무부가 구성가격의 이윤율 산정시,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판매' 물량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관련 실제자료(actual data)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반
	- **동일 부류 상품의 정의** : 미국 상무부가 유정용 강관(OCTG) '동일 부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의 범위(유사제품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반
	- **이윤 상한** : 미국 상무부가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성가격 이윤 산정시, 이윤 상한(profit cap)을 산정하지 않은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반
관계사 거래	- **넥스틸과 원재료 공급사의 제휴관계 판단** : 미국 상무부가 양사간 제휴관계(association)를 인정하고, 넥스틸의 원재료 비용(cost) 자료와 넥스틸이 원재료 공급사의 계열사에 판매한 자료를 부인한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미위반
제3국 수출가격	- **물량기준** : 제3국에서 충분한 규모의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만 생산자의 '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viability test)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미위반
의견제출 기회 미제공 등	- 아르헨티나 Tenaris社 자료 적용시 수출업체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결정내용 미통보, 관련 사항의 '핵심적 사실(essential fact)'로 미공개, 자발적 답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미위반